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따른 수준”을 “따른 수준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쇄정(鎖錠, 전기적)”을 “잠금(전기적)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2항 중 “「도로교통법」 제3조”를 “「도로교통법」 제3조”로 한다.

제40조제2항제1호 중 “쇄정되어”를 “잠금되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노면전차 혼용차로)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	제4조(노면전차 혼용차로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(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7조에 <u>따른 수준</u> 을 말한다)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등급 이하로 되는 경우	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따른 수준</u> ----- ----- ----- -----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선로전환기) ① (생략)	제13조(선로전환기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선로전환기는 노면전차가 통과하는 중에는 궤도의 방향이 전환되지 아니하도록 <u>쇄정(鎖錠, 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잠금장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 되어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잠금(전기적</u> ----- <u>기계적</u> ----- ----- -----.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관제설의 통신설비) ① (생략) ② 관제설과 「도로교통법」 제3조에 따른 신호기 등을 설치·관리하는 기관 간에는 전용 통신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. 제40조(속도제한) ① (생략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속 15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. 1. 선로전환기가 <u>쇄정되어</u> 있지 아니한 곳을 운행할 때 2. 3. (생략) ③ (생략)	제28조(관제설의 통신설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「도로교통법」 제3조----- ----- -----. 제40조(속도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----- <u>잠금되어</u> ----- ----- 2. 3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--	---